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 지 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2년 9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3. 제안이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환경계획의 명칭과 수립 주기에 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안 제3조)

나. 환경계획 명칭 및 수립 주기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안 제11조, 제27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개정안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확대 적용하고, 환경계획수립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계획 명칭 및 수립 주기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개정안은 환경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생활환경” 과 “환경오염” 에 대한 범주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이를 위한 환경계획의 수립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변경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3조제3호 중 “소음·진동·악취” 를 “소음·진동·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토양오염” 을 “토양오염, 해양오염” 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공조명” 을 “인공조명” 으로 정비함.
 - 제11조의 제목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을 “(환경계획의 수립)” 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계획” 을 “환경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보전계획” 을 “환경계획”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보전종합계획” 을 “환경계획” 으로 정비함.
 - 제27조의 제목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으로 정비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관련 부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
- 입법예고(‘22.10. 4.~‘22.10.1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생활환경”과 “환경오염”에 대한 범주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이를 위한 환경계획의 수립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막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이루고자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